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19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06. 24.(금)]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내 19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19층 953세대

(전용면적 68㎡A 18세대 / 68㎡B 6세대 / 71㎡A 9세대 / 79㎡A 71세대 / 79㎡B 138세대 / 84㎡A 457세대 / 84㎡B 68세대 / 84㎡C 183세대 / 84㎡P 3세대)

부산 에코델타시티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19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주관 업체 안내

■ 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디엘이앤씨(주) / 극동건설(주) / (주)대성문 / 흥우건설(주) / (주)신화종합건설]

■ 시공업체 : 디엘이앤씨(주) / 극동건설(주) / (주)대성문 / 흥우건설(주) / (주)신화종합건설

■ 분양주체 : 디엘이앤씨(주)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약을 통해 주택전시관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의 내용은 분양주체 홈페이지(www.elif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51-751-5535)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 또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는 청약홈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총 분양대금의 6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경우(이자후불제)에도 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중도금대출이 총 분양대금의 50%이내에서 대출 가능함에 따라, 총 분양대금의 10%인 중도금 6회차(10%)는 자격으로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시공업체, 분양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해당지역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항공기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2.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은 2022.3.14.(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4391호)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6.24.(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10년간

※ 20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청약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구분	주요 내용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가입 6개월 이상, 월납입 6회 이상	필요 가입 6개월 이상 월납입 6회 이상	필요 가입 6개월 이상 월납입 6회 이상	필요 가입 24개월 이상 월납입 24회 이상	필요 가입 24개월 이상 월납입 24회 이상 선납금 포함 저축액 600만 원 이상	필요 가입 24개월 이상 월납입 24회 이상	필요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
자산기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은 청약통장 불필요

※ 일반공급시 청약통장 신청 자격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공급규칙 제35조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बैं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등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분양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이 인정되고, 후당첨은 무효 또는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소수점 이하 절상)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소유권이전일까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소유권이전일까지)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4항에 의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지역/기타지역)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중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등,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해당지역 (부산광역시 거주자)	일반1순위 기타지역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일반2순위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포함)	일반공급 당첨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포함)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2022.07.04.(월)	2022.07.05.(화)	2022.07.06.(수)	2022.07.07.(목)	2022.07.13.(수)	2022.07.14.(목) ~2022.07.27.(수)	2022.07.30.(토) ~2022.08.08.(월)	2022.08.29.(월) ~2022.09.07.(수)
방법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09:00~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input type="checkbox"/>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주택전시관(10:00~17:0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회신이 늦어질 경우 상기 계약일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장소	<input type="checkbox"/> 분양주체 주택전시관 <input type="checkbox"/>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input type="checkbox"/>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input type="checkbox"/>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input type="checkbox"/>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주택전시관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3-10번지 - 제출서류는 분양주체 홈페이지(www.elife.co.kr)를 참조		
비고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분양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주택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공고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나 이후 법령 개정 및 정책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청약 신청자 안내사항

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관련하여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분양주체에서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검색(확인)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은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는 불가능함

2.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각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의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 자산보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청자의 자산보유 산정 시점 및 적용

- 신청자 및 세대원의 자산보유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합니다. 자산보유 현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하며, 조회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산현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정계약일 이전까지는 자산보유 현황이 변동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모집공고일 현재 자동차 3천만 원 보유하였으나, 모집공고일~조회일 이전 5천만 원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조회일에는 5천만 원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의 자산보유 현황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 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자산보유 관련 자료는 <표1>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산보유자료 제공기관(자산보유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공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보유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분양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표1>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000원	건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액(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건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 colspan="2">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5,57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액 확인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액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가액 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X {1-0.1X경과년수}]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인 불가 시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3. 소득 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 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소득금액 산정 시점 및 적용**

- 신청자 및 세대원의 소득산정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합니다. 소득현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하며, 조회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현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정계약일 이전까지는 소득현황이 변동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사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생애최초	우선공급(70%)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일반공급(30%)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소득 無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有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일반공급(30%)	배우자소득 無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有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 8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53,753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기준) 추가

■ **가구원수 산정기준**

구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 성인인 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소득조사는 <표3>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 표의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 → ②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서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를 적용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분양주체에서는 당점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분양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원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급여, 사학연금관리공단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연금관리공단: 국방부퇴직연금급여,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 보훈대상자명예수당/보훈대상보상급여 등

II. 공급규모 및 공급금액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내 19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19층 953세대(전용면적 68㎡A 18세대 / 68㎡B 6세대 / 71㎡A 9세대 / 79㎡A 71세대 / 79㎡B 138세대 / 84㎡A 457세대 / 84㎡B 68세대 / 84㎡C 183세대 / 84㎡P 3세대)

- 특별공급 807세대(기관추천 95세대, 국가유공자등 47세대, 다자녀가구 95세대, 신혼부부 285세대, 노부모부양 47세대, 생애최초 238세대 포함), 일반공급 1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 관리사무소, 기계/전기실, 경비실(2개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통합커뮤니티(피트니스, G/X룸, 건식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스카이라운지, 에듀센터(독서실, 스터디룸), 키즈스테이션, 그린카페, 개인스튜디오 등

2. 공급대상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 표기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택공급 면적(㎡)			그 밖의 공용 면적(㎡)					계약면적 (㎡)	기관 추천	국가 유공자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기타공용 면적	지 하 주차장												
공공 분양 주택	2022000398	01	68.9754A	68A	68.9754	22.5117	91.4871	3.6026	36.0983	131.1880	46.1426	18	2	1	2	5	4	1	3	2	
		02	68.9911B	68B	68.9911	23.2673	92.2584	3.6034	36.1065	131.9683	46.1531	6	-	-	-	3	2	-	1	1	
		03	71.8104A	71A	71.8104	23.2039	95.0143	3.7507	37.5820	136.3470	48.0390	9	1	-	1	3	2	-	2	1	
		04	79.9860A	79A	79.9860	26.7753	106.7613	4.1777	41.8607	152.7997	53.5084	71	7	4	7	21	18	4	10	4	
		05	79.9995B	79B	79.9995	26.3963	106.3958	4.1784	41.8678	152.4420	53.5174	138	14	7	14	41	35	7	20	8	
		06	84.9821A	84A	84.9821	27.2684	112.2505	4.4387	44.4754	161.1646	56.8506	457	45	23	45	136	114	23	71	31	
		07	84.9893B	84B	84.9893	26.9206	111.9099	4.4390	44.4792	160.8281	56.8555	68	7	3	7	21	17	3	10	4	
		08	84.9927C	84C	84.9927	27.3797	112.3724	4.4392	44.4810	161.2926	56.8577	183	19	9	19	54	45	9	28	11	
		09	84.9964P	84P	84.9964	33.5021	118.4985	4.4394	44.4829	167.4208	56.8602	3	-	-	-	1	1	-	1	-	
	합 계											953	95	47	95	285	238	47	146	62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도 는 ㎡ ÷ 3.3058)

· 주거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 면적에서의 기타공용 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 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 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 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거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등에 따라 세대별 대지지분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각종 홍보홍보물에 표현된 주택형 등은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주택전시관 방문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택공급 면적(주거전용 면적+주거공용 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3. 공급금액

(단위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 / 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잔금 30%
						계약시	2023-01-25	2023-05-25	2023-09-25	2024-02-23	2024-06-25	2024-10-25	입주 시
68.9754A	68A	111동(2,3,4호)	2층	2	366,0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109,800,000
			3층	2	373,800,000	37,380,000	37,380,000	37,380,000	37,380,000	37,380,000	37,380,000	37,380,000	112,140,000
			4~9층	12	377,70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113,310,000
			10층 이상	2	381,60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114,480,000
68.9911B	68B	111동(1호)	2층	1	361,20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108,360,000
			3층	1	369,10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36,910,000	110,730,000	
			4~7층	4	373,0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71.8104A	71A	111동(2,3,4호)	2층	1	400,30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40,030,000	120,090,000
			3층	1	408,40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122,520,000	
			4~9층	6	412,50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123,750,000	
			10층 이상	1	416,50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124,950,000	
79.9860A	79A	101동(3호) 106동(3호) 107동(3호) 115동(3호)	1층	3	427,10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42,710,000	128,130,000
			2층	4	436,20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130,860,000	
			3층	4	445,30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133,590,000	
			4~9층	24	449,80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134,940,000	
			10층 이상	36	454,40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136,320,000	
79.9995B	79B	111동(5호)	2층	1	425,60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42,560,000	127,680,000
			3층	1	434,70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130,410,000	
			4~9층	6	439,20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131,760,000	
			10층 이상	1	443,80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133,140,000	
		102동(3호),103동(3호) 104동(3호),105동(3호) 108동(3호),109동(3호) 114동(4호)	1층	5	412,10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41,210,000	123,630,000
			2층	7	421,10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126,330,000	
			3층	7	430,20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129,060,000	
4~9층	42	434,70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43,470,000	130,410,000			

			10층 이상	68	439,20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43,920,000	131,760,000		
84.9821A	84A	102동(1,2호), 103동(1,2호) 104동(1,2호), 105동(1,2호) 108동(1,2호), 109동(1,2호) 110동(1,2,3호), 111동(6호) 112동(1,2,3,4호), 113동(1,2,3,4호), 114동(1,2호)	1층	20	449,10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134,730,000		
			2층	26	458,60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137,580,000	
			3층	26	468,20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140,460,000	
			4~9층	148	472,90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141,870,000	
			10층 이상	153	477,700,000	47,770,000	47,770,000	47,770,000	47,770,000	47,770,000	47,770,000	47,770,000	47,770,000	143,310,000	
		101동(2호) 106동(2호) 107동(2호) 114동(3호) 115동(2호)	1층	4	444,30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133,290,000	
	2층		5	453,80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45,380,000	136,140,000		
	3층		5	463,40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139,020,000		
	4~9층		30	468,20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140,460,000		
	10층 이상		40	472,90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141,870,000		
84.9893B	84B	101동(4호) 106동(4호) 107동(4호) 115동(4호)	2층	4	481,0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44,300,000	
			3층	4	490,60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49,060,000	147,180,000	
			4~9층	24	495,30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148,590,000	
			10층 이상	36	500,10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150,030,000	
84.9927C	84C	110동(4호)	1층	1	440,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32,000,000	
			2층	1	449,50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134,850,000	
			3층	1	459,10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137,730,000	
			4~7층	4	463,90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139,170,000	
			101동(1호),102동(4호) 103동(4호),104동(4호) 105동(4호),106동(1호) 108동(4호),107동(1호) 109동(4호),115동(1호)	1층	6	435,200,000	43,520,000	43,520,000	43,520,000	43,520,000	43,520,000	43,520,000	43,520,000	43,520,000	130,560,000
		2층		10	444,80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44,480,000	133,440,000	
		3층		10	454,30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136,290,000	
		4~9층		60	459,10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45,910,000	137,730,000	
		10층 이상		90	463,90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139,170,000	
					10층 이상	3	554,700,000	55,470,000	55,470,000	55,470,000	55,470,000	55,470,000	55,470,000	55,470,000	55,470,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디엘이앤씨(주) / 극동건설(주) / (주)대성문 / 후우건설(주) / (주)신화종합건설 / 시공업체 : 디엘이앤씨(주), 극동건설(주), (주)대성문, 후우건설(주), (주)신화종합건설 / 분양주체 : 디엘이앤씨(주)]이며,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주택형별·층별 공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비(유상옵션), 제세공과금(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공급 면적(주거전용 면적 및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기타공용 면적 및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되며, 납부순서는 연체금을 공제한 후 지정 납부금액 공제 순으로 계산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추후 안내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추후 안내예정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 기간 도래 전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2001동 1502호 계약자 → '20011502홍길동' / 2003동 702호 계약자 → '20030702홍길동')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4.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은 선택불가)

■ 품목 상세

구 분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시공되지 않는 품목)
바닥재	바닥난방, 발코니 바닥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슬리브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벽, 천장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처리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도장, 거실아트월, 주방타일, 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조명기구	매입 등기구(욕실제외), 배선기구류(콘센트, 스위치)	벽/천장 직부형 등기구, 욕실 등기구, 가구 부착형 등기구
욕실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전기 배관/배선)	타일(바닥, 벽), 천장,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주방가구	설비배관, 자동식소화기(렌지후드 관련), 주방 배기덕트	주방가구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가스쿡탑, 후드등의 주방 빌트인 가전제품류, 주방 TV
창호	문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장,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 발코니 도어, 대피공간 도어, 실외기실 도어, PL창호, 실외기 그릴창	창호(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가구류 및 기타	월패드, 배선기구류(콘센트, 스위치. 단, 욕실제외),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현관생활안내기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가구 등 가구류 일체 및 가구 부착형 전기/통신 스위치/콘센트류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 외 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문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분합문(PVC 내부창호 등)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시공은 가능하나 타 자재(대리석 등 두께가 상이한 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장 및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쿠팅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으로 인한 건설자재 폐기물 등은 해당 입주민이 처리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입주민에게 청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동별 최상층 층수	68A	68B	71A	79A	79B	84A	84B	84C	84P
6~10층 이하	26,458,000	26,681,000	27,478,000	-	30,769,000	32,462,000	-	32,498,000	-
11~15층 이하	-	-	-	-	-	30,459,000	-	-	-
16층~25층 이하	-	-	-	29,289,000	29,189,000	30,795,000	30,702,000	30,829,000	32,510,000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5.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일정			비고
		계약금 10% (계약 시)	중도금 10% (2023-01-25)	잔금 80% (입주시)	
68A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68B	1,250,000	125,000	125,000	1,000,000	
71A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79A	2,010,000	201,000	201,000	1,608,000	
79B	2,410,000	241,000	241,000	1,928,000	
84A	1,310,000	131,000	131,000	1,048,000	
84B	1,170,000	117,000	117,000	936,000	
84C	4,750,000	475,000	475,000	3,800,000	
84P	4,610,000	461,000	461,000	3,688,000	

■ 발코니 확장비 납입계좌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I (발코니 확장비)	추후 안내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추후 안내예정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 기간 도래 전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01동 701호 계약자 → '2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등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자재조달 및 세대공사 등 공사여건 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다용도실 등)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으로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으며,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또한 입주 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68㎡B(111동), 71㎡A(111동), 84㎡B(101,106,107,115동)은 세대에 오픈발코니가 설치되므로 주택전시관 등에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오픈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픈발코니는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오픈 발코니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몰탈,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6. 추가선택품목 II (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등)은 주택전시관(분양사무소)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I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로 진행되며, 추가선택품목II(유상옵션)의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대수	구성	제조사	판매가격	비고
68A	ALT-1	2	거실+침실 1	삼성/LG	3,45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4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150,000	
68B	ALT-1	2	거실+침실 1	삼성/LG	3,45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4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150,000	
71A	ALT-1	2	거실+침실 1	삼성/LG	3,45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4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150,000	
79A	ALT-1	2	거실+침실 1	삼성/LG	3,70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4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480,000	
79B	ALT-1	2	거실+침실 1	삼성/LG	3,70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4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480,000	
84A	ALT-1	2	거실+침실 1	삼성/LG	3,70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4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480,000	
84B	ALT-1	2	거실+침실 1	삼성/LG	3,70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4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480,000	
84C	ALT-1	2	거실+침실 1	삼성/LG	3,70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4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480,000	
84P	ALT-1	3	거실+주방+침실 1	삼성/LG	5,45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5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		7,800,000	

-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 가전사별,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 시 별도로 세부 안내 예정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삼성, LG 제품 중 선택할 수 있고 (삼성의 경우 무풍에어컨만 제공) 공기청정기는 미장착된 일반형 제품입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제조사	구성내용 및 상품모델	판매가격	비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set	오브제컬렉션	68A, 71A, 84A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BC4S1AA1 (G) BC3K1AA1 (G)	5,700,000	오브제컬렉션 선택 시 구성 및 색상 변경 불가
	오브제컬렉션+팬트리장	68B, 79A, 79B 84B, 84C, 84P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 팬트리장	BC4S1AA1 (G) BC3K1AA1 (G)	6,500,000	
	비스포크	68A, 71A, 84A	삼성	비스포크 1 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 도어 변온냉장고 +비스포크 1 도어 김치냉장고	RR40A7(9/8)95AP (satin)	5,600,000	비스포크 선택 시 구성 및 색상은 변경불가
					RZ24A5(9/8)G0AP (satin)		
비스포크 + 팬트리장	68B, 79A, 79B 84B, 84C, 84P	비스포크 1 도어 냉장고 +비스포크 1 도어 변온냉장고 +비스포크 1 도 김치냉장고 + 팬트리장		RR40A7(9/8)95AP (satin)	6,400,000		
				RZ24A5(9/8)G0AP (satin) RQ34A7(9/8)45AP (satin)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전 주택형	삼성	식기세척기 (12 인용)	DW60T7065SS	870,000	택 1
			SK 매직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와이드 (14 인용)	DWA-90R5B	1,350,000	
			LG	LG DIOS 식기세척기 (12 인용)	DUB22SB	1,160,000	
전기오븐	전기오븐	전 주택형	SK 매직	스팀 오븐 레인지	EON-B401SA	650,000	택 1
			SK 매직	IOT 스팀 오븐 레인지	EON-B440SA	1,050,000	
전기쿡탑	하이브리드쿡탑	전 주택형	SK 매직	인덕션 2 구+하이라이트 1 구	ERA-BT030	800,000	택 1
	인덕션		SK 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IHR-BQ40E	1,950,000	

■ 불박이 가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선택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주방수납장	주방 대형 팬트리장	84A	대형 팬트리장 (인출식서랍 포함)	1,750,000		
		68B	주방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상판)	1,150,000		
	주방아일랜드장	79B	주방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상판)	1,150,000		
		84C	주방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상판)	1,150,000		
침실	드레스룸 ¹ 가구	68A	ALT-1	불박이장	3,570,000	택 1
			ALT-2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3,150,000	
		68B	ALT-1	불박이장	2,750,000	택 1
			ALT-2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2,350,000	
		71A	ALT-1	불박이장	3,250,000	택 1
			ALT-2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3,130,000	
		79A	ALT-1	불박이장	3,450,000	택 1
			ALT-2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3,630,000	
		79B	ALT-1	불박이장	2,900,000	택 1
			ALT-2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2,550,000	
84A	ALT-1	대형화장대 + 불박이장	3,650,000	택 1		
	ALT-2	대형화장대 + 불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3,850,000			
84B	ALT-1	대형화장대 + 불박이장	3,650,000	택 1		

	84C	ALT-2	대형화장대 +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3,850,000	택 1	
		ALT-1	대형화장대 + 불박이장		3,120,000		
		ALT-2	대형화장대 +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2,750,000		
	침실 1 불박이장	68A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320,000	
		68B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130,000	
		71A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320,000	
		79A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320,000	
		79B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600,000	
		84A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600,000	
		84B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600,000	
		84C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320,000	
	침실 2 불박이장	68A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250,000	
		68B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250,000	
		71A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250,000	
		79A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250,000	
		79B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250,000	
		84A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470,000	
		84B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470,000	
		84C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470,000	
84P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470,000			

■ 마감재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선택		-	판매가격	비고
마루마감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	68A	ALT1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	1,170,000	택 1
			ALT2	노르딕플렉스 (143mm)		1,170,000	
		68B	ALT1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	1,170,000	택 1
			ALT2	노르딕플렉스 (143mm)		1,170,000	
		71A	ALT1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	1,250,000	택 1
			ALT2	노르딕플렉스 (143mm)		1,250,000	
		79A	ALT1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	1,400,000	택 1
			ALT2	노르딕플렉스 (143mm)		1,400,000	
		79B	ALT1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	1,400,000	택 1
			ALT2	노르딕플렉스 (143mm)		1,400,000	
		84A	ALT1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	1,450,000	택 1
			ALT2	노르딕플렉스 (143mm)		1,450,000	
		84B	ALT1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	1,450,000	택 1
			ALT2	노르딕플렉스 (143mm)		1,450,000	
		84C	ALT1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	1,450,000	택 1
			ALT2	노르딕플렉스 (143mm)		1,450,000	
		84P	ALT1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	1,450,000	택 1
			ALT2	노르딕플렉스 (143mm)		1,450,000	

거실마감	거실 아트월	68A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반무광 : STATUARIO ORO	4,950,000		
		68B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반무광 : STATUARIO ORO	4,800,000		
		71A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반무광 : STATUARIO ORO	5,200,000		
		79A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반무광 : STATUARIO ORO	5,350,000		
		79B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반무광 : STATUARIO ORO	5,450,000		
		84A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반무광 : STATUARIO ORO	5,650,000		
		84B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반무광 : STATUARIO ORO	5,450,000		
		84C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반무광 : STATUARIO ORO	3,500,000		
	84P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반무광 : STATUARIO ORO	2,600,000			
	거실 디자인 패널	68A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250,000	
		68B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530,000	
		71A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250,000	
		79A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350,000	
		79B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680,000	
		84A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400,000	
		84B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400,000	
84C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700,000		
84P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2,700,000			

■ 욕실 특화상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구성	판매 가격	비고
욕실 특화상품 (욕실 1 + 욕실 2)	전 주택형	욕실복합환풍기 + 세면대하부장 + 비데일체형양변기	2,720,000	

■ 조명 특화상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구성	판매 가격	비고
조명 특화상품	68A, 68B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정시트패널 침실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2, 침실 3)	4,238,000	거실 디밍제어시스템은 기본 제공 침실 1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기본 제공
	71A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정시트패널 침실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2, 침실 3)	4,288,000	
	79A, 79B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정시트패널 침실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2, 침실 3)	4,838,000	
	84A, 84B, 84C, 84P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정시트패널 침실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2, 침실 3)	4,938,000	

■ 현관 특화상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구성	판매 가격	비고
현관 특화상품	전주택형	ALT-1 오픈 현관장 + 조명 + 신발살균기 + 현관중문 (3 연동 슬라이딩 / 그레이)	2,800,000	택 1 에어브러쉬 기본 제공
	전주택형	ALT-2 오픈 현관장 + 조명 + 신발살균기 + 현관중문 (3 연동 슬라이딩 / 브라운)	2,800,000	

■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접수일정 및 선택방법은 계약체결기간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선택 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및 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는 추가선택품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 (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제품의 모델 및 사양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시 동제조사의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관람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시되지 않는 일부 가전제품(SK매직 식기세척기, 스팀오븐, 하이브리드쿡탑)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 시 전시하고 설명 예정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모델, 상품구성 및 디자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에는 일반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 되어 반영되었으므로 금액변동 없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욕실 배기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불박이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아일랜드장 선택 시 노출되지 않는 가구 측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68B, 79B, 84C주택형에 한함)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은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3구 가스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가구패널 마감은 제조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해당금액은 판매가격에 포함되었습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은 68B, 79B, 84C주택형의 경우 아일랜드장 선택 후 선택 가능합니다. .
- 전기오븐 옵션은 아일랜드장 하부에 설치되며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해당부위는 오픈 수납장으로 마감됩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LG 오브제 냉장고는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계약자 개별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오브제 냉장고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단종(성능개선, 디자인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불박이 가구 및 가전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불박이 가구 옵션은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형별,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특화 상품 중 오픈형 신발장 설치 시 추가로 설치되는 신발살균기 및 기본으로 제공되어 설치되는 에어브러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특화 상품 중 오픈형 신발장 설치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에어브러쉬는 동일하게 제공되고, 기본 신발장 전면에 설치하는 거울은 현관팬트리 도어로 이동 설치되며, 우산걸이 및 다용도랙은 현관팬트리장 내로 디자인 변경되어 설치됩니다
- 침실2 불박이장 선택 시 가구 설치를 위한 경량벽체가 가구 측면에 설치되며, 가구 설치로 인한 공간협소로 인해 침실문 옆에 설치된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 콘센트가 가구 측면 경량벽체로 이동 설치됩니다.
- 침실1 화장대에 설치되는 등기구는 화장대 크기에 따라 설치 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1 불박이장 선택 시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벽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침실1 불박이장 선택 시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통신 포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별 침실1 및 드레스룸 내 창호 커튼박스는 불박이장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와의 간섭으로 인해 커튼박스 크기(폭)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스위치, 콘센트, 배선기구, 다운라이트, 화재감지기 등)
- 현관특화 상품 중 현관 오픈형 신발장 판매가격에는 가구디자인 변경 금액과 상부 LED 조명, 신발살균기 전원공급 관련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현관특화 상품 중 현관중문은 시공 상 중문틀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특화 상품 중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유리 포함)으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사양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부위 세라믹 패널 및 벽 디자인 패널 마감 옵션 선택 시 마감두께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세대 (디자인월 및 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 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폭 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세라믹 패널)의 본 공사 시 마감은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선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패널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설치세대의 천장 시트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직간접 조명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미설치 시 욕실 안쪽에 욕실배기팬이 설치되며, 복합 환풍기 설치 시 욕실 배기팬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설치 시 우물천장이 시트 패널로 마감되며, 우물 천장 내 직부등이 삭제되고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으로 설치됩니다. 설치되는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은 상부 간접조명, 하부 직부형 조명으로 구성되며, 하부 직부형 조명은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설치 세대는 우물천장 시트 패널 마감으로 인해,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와 우물천장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설치 시 입주 후 고객이 조명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 스위치와 배선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옵션 미선택 세대는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설치 시 유지보수를 위한 SMPS(전력변환장치) 패널이 렌지 후드장 내부에 별도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렌지 후드장 내부 수납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에 설치되는 색온도 디밍 제어시스템은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전구색~주광색)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추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거실에 설치되는 디밍 제어시스템은 색온도 조절기능은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여부에 따른 비교 (추가선택품목 주택형별 적용은 상기 품목표 참고)

추가선택 품목 설치시	추가선택 품목 미설치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2대 혹은 전체실 선택	일반에어컨용 냉매배관 2실 설치(거실, 침실1)
식기세척기	수납장 설치
하이브리드/ 쿨탑 / 인덕션	3구 가스쿡탑 설치
84A 주방팬트리	일반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침실1 드레스룸 가구	화장대 + 드레스룸도어 + 시스템선반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 143mm (노르딕플렉스/ 모던플렉스 중 선택)	강마루 115mm
아트월(세라믹 패널)	디자인 월 마감
디자인 패널	도배지 마감
[현관 특화 상품]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신발살균기 (에어브러쉬는 기본 제공)	현관 중문 미설치 신발장 + 에어브러쉬
[욕실 특화상품 (욕실 1, 욕실 2)] 욕실 복합환풍기 + 세대대 하부장 (카운터형 세면기+하부장) +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 배기팬 (욕실 1, 욕실 2)+ 페데스탈 세면기 (욕실 1, 욕실 2) 원피스 양변기 + 분리형 비데 (욕실 1, 욕실 2)
[조명 특화 상품]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 천장 시트패널 +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침실 2, 침실 3) [거실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1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기본 제공]	거실 직부형 조명 + 천장 도배 마감 +거실 디밍제어시스템 +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침실 1)

■ 추가선택 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Ⅱ(유상옵선)	우리은행	1005-804-334927	디엘이앤씨(주)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301동 701호 계약자 → '3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분양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제외)

추천대상자	입주저축 구비여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필요 없음
-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체육유공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주택형	장애인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10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다문화 가족	체육 유공자	합계
	부산	울산	경남									
68A	2	-	-	1	-	-	-	-	-	-	-	3
68B	-	-	-	-	-	-	-	-	-	-	-	-
71A	1	-	-	-	-	-	-	-	-	-	-	1
79A	1	1	1	4	1	1	1	1	-	-	-	11
79B	3	1	1	7	1	1	1	3	1	1	1	21
84A	12	6	6	23	3	3	3	3	3	3	3	68
84B	1	1	1	3	-	-	-	1	1	1	1	10
84C	4	3	3	9	1	1	1	3	1	1	1	28
84P	-	-	-	-	-	-	-	-	-	-	-	-
(합계)	24	12	12	47	6	6	6	11	6	6	6	142

※ 담당기관 : 장애인(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등·장기복무제대군인(부산지방보훈청 보상과), 10년 이상 복무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북한이탈주민(통일부 남북하나재단(하나원), 중소기업근로자(부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등(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의사상자(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유의사항

-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양주체의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 만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반드시 청약 신청하여야 함. 청약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3.06.25.~2022.06.24.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태아나 입양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기타 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② **배점기준표** :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만약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2018.12.11.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 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소득기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자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30%는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70%)
 - 월평균 소득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2순위
- ②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기타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30% + 우선공급의 잔여 물량)**

- 월평균 소득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2순위
- ②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기타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③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순위	주요 내용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018.12.11.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목	기준	비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구역을 말함)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 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선택 불가
바. 자녀의 나이(한부모 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3세 또는 4세(만5세 미만) : 2점 5세 또는 6세(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 가구 소득	배우자소득 無	80%	4,967,147	5,760,647	5,860,858	6,223,860	6,586,862	6,949,865
	배우자소득 有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구분	산정 방법
일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 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재혼 또는 이혼	-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임신	-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허위임신·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태아 수만큼 산정)
입양	-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기간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동·호 변경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공급)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자 포함) 전원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신청자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합니다.
- 소득은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자 포함) 전원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 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중 만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산합니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에서 제외)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자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30%는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일반공급 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70%)**
 -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공급함
 - 경쟁이 있는 경우, ①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기타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②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30% + 우선공급의 잔여 물량)**
 -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①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기타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②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동·호 변경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노부모부양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㉑~㉓)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 포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1)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공급)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자로 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기타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②<**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1순위)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당첨자 선정 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당첨자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동·호 변경 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③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분(세대원 포함)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자로 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기타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②<**당첨자 선정순차**> ③<**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기타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②<**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당첨자 선정 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당첨자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동·호 변경 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 예시1)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 예시2)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 예시3)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 예시4)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 예시5)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 예시6)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IV. 신청 시 확인 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 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검색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중복청약 및 중복당첨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당첨일로부터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당첨일로부터 1년간 재당첨제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3.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 사항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으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주택전시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다자녀 가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합니다.
- 각 주택형별로는 최하층 배정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신청 주택형에 최하층 배정물량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최하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분양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미 신청자도 최하층 주택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동·호수 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동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전산 추첨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신청방법	① 최하층 주택 배정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되며, 취소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해당침 제한 및 전매행위 제한

■ 해당침 제한에 관한 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 지 제한됩니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의 경우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제출 등)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입니다. (전 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기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분양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입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도시공사에서 우선 매입 할 수 있습니다.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7.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절차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신청방법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22.07.0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현장접수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	2022.07.05(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1순위 기타지역(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2022.07.06(수) 09:00~17:30		
	일반공급 2순위	2022.07.07(목)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등,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대상자 중 유공자 및 장애인 등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대행접수는 불가능하오니, 현장방문 시 서면신청서를 통한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VI.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PC · 모바일)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분양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그 외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경우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 우선순위를 구분하므로 지역 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 일자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조회 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2. 방문신청

■ 특별공급(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주택전시관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구분		구비사항				
특별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주택전시관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인감도장 또는 본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자 대리신청시	<p>·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일반공급(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접수)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을 통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자 대리신청시	<p>·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됨.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가 확인하며,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사업주체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II.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1.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자격서류 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당첨자)
일시	2022.07.13.(수)	특별공급 : 2022.07.14.(목)~2022.07.27.(수) 일반공급 : 2022.07.30.(토)~2022.08.08.(월)	2022.08.29.(월)~2022.09.07.(토)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주택전시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3-10번지)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의 전산검색 결과 일정과 당첨자 서류 접수가 지연될 경우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기간 내 감염증 예방관리 수칙의 정부 시책에 따라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분양주체 대표번호(051-751-5535)로 사전방문예약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주택전시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청약 신청자(특별공급 신청자 중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 일 이후 자격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분양주체 주택전시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분양주체 홈페이지(www.elif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7.13 (수) ~ 2021.07.22 (금) (10일간)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22.07.13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2. 당첨자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 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인은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소득 및 자산 조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④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 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⑧ 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4.(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②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⑦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주택전시관에 비치)
		⑧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4.(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③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경우 	
	○	④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체결장소에 비치) 	
	○	⑤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체결장소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참고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①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주택전시관 비치) 	
	○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해당여부	구분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재직증명서(상세)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⑦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발급,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발급

3. 계약 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무통장 입금증)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계좌가 모두 다르며, 계약금 확인 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수입인지 ※ 기재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금융권 및 우체국 발행 가능)	
	③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공고일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서명날인 시 본인만 계약가능	
	⑤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예정] 및 증빙자료 ※ 자격 검증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인감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서명 날인 시 본인만 계약 가능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위임용)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예관한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함]
- 부적격 청약, 공급 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필요 서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 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후당첨된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릅니다.

4. 입주금 납부, 중도금 대출 관련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상의 할인을 기준을 적용하며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 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한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자후불제)이 가능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 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이자후불제)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 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 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무이자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계약자는 대납한 이자총액을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까지의 실제 입주일(입주증 발급 완료 시까지))까지 사업주체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 시에는 이 계약서 상의 연체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변경시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분양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07%,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안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안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항(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관련 유의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서류의 결격, 관계 법령 위반 및 기타)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 및 소득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상기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발견 시 계약 취소)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하여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분양주체로 서면통보(우편, 인터넷, 팩스)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자 및 당첨자는 주택형별로 제시된 공급금액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은 변경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분양 홈페이지(www.elife.co.kr)에 변경내용을 포함한 정정공고를 청약접수일 전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신청자들은 청약신청 시 변경 및 수정사항을 숙지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자 자격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디엘이앤씨(주), 극동건설(주), (주)대성문, 흥우건설(주), (주)신화종합건설) / 시공업체 : 디엘이앤씨(주), 극동건설(주), (주)대성문, 흥우건설(주), (주)신화종합건설 / 분양주체 : 디엘이앤씨(주)]입니다
- 본 사업의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된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주택전시관은 2022년 03월 14일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분묘,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세대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법정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한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층별 공급금액이 상이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79B, 84A주택형의 확장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홈페이지 또는 주택전시관에서 제공하는 분양홍보물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전에 주택형 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비확장 부분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 및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종 기반시설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관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급 계약해지(해제)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시공사는 디엘이앤씨(주), 극동건설(주), ㈜대성문, 흥우건설(주), (주)신화종합건설이며, 대표사인 디엘이앤씨(주)가 본 사업의 설계, 시공, 준공, 분양, 입주, 하자, 민원처리를 종합 관리합니다.

2. 지구 · 단지 여건 등 안내

■ 주택전시관 관련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은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주택전시관을 우선으로 함)
- 건본세대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서(단위세대 전등, 전열 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주택전시관에 따르며,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주택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편의를 위하여 약식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건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실제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최하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 (동별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배치에 따라 최하층 세대가 2층인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 주택형인 79Bm²는 스타일A, 84Am²는 스타일B로 설치되어 있으며 무상옵션 선택사항입니다.
- 주택전시관 건본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세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건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예정사항은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바라며, 계약체결 전 주택전시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바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모형(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단지구획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관련 유의사항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피난구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되며 최상층, 최하층 등 전세대가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방성 확보 및 입면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외부 창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건본세대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전평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등)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 및 복도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 2층(필로티 포함)은 단위세대 방법을 위하여 방법감지기가 설치되며, 실제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타입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천정물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되며 주택전시관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진동, 소음 등의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색상과 외장재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등기구 조도량[lx] 및 색온도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조도는 KS 조도 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릴창 근처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의 디테일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장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슴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및 주거전용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택형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위치 방향,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 크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시공을 위하여 시공관련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 위치에 따라 세대 환기 장치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후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TV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장소에 따라 창호 개폐, 가전제품, 주방용품 배치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으로 아일랜드장 선택 후 가구의 위치를 임의로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차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일부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인·허가 과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문틀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공사 중 경비실 및 진입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지반고)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층고, 지하 주차장레벨, 램프의 위치, 옹벽의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규모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동표시, 외부색채, 외관 및 옥탑디자인, 옥탑구조물, 지붕, 입면디자인(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길이 및 높이 등), 조명시설, 담장,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수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설비, 고가수조(108동)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위치는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8동, 112동, 113동에 설치되며, 태양광 패널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의 의한 빛반사, 진동,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 웨더스테이션(기상측정장비)의 설치 위치는 105동에 설치되며, 웨더스테이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웨더스테이션에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TV 안테나 설치 위치는 101동에 설치되며, TV 안테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TV 안테나의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의 옥외안테나는 아파트 옥상 104동, 106동, 107동, 109동, 110동, 113동, 115동에 설치되고,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는 아파트 옥상 104동, 106동, 107동, 109동, 110동, 113동, 115동에 설치됩니다.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 지하층 설치는 102동, 110동, 115동 통신기기에 설치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피뢰침에 의한 진동, 소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경관조명, 옥외보안 등에 의해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 되어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 마감재의 석재 설치에 의한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조건이행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건설사브랜드 B는 설치되지 않으며, 건물측벽에 마을이름 및 주동번호만 표기될 예정이며, 건설업체명, 브랜드명, 심볼, 로고 등은 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입구시설물에만 문자 조각 형태로 명기 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적용한 사업지로 태양광 패널을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8동, 112동, 113동 지붕에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심의과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계획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형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부근 101동, 106동 및 부출입구 부근 110동, 111동은 아파트 출입 및 지하주차장 램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음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정전 등 비상상황, 주기적 유지관리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필요에 의해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될 시 106동, 107동 부근 D/A를 통해 매연,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공용 전기 요금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운지 테라스 공간 일부에 하부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배관 및 우수입상관 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텃밭 조성 시,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 하여야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폭, 도로차선, 도로레벨, 완충녹지, 신호등, 무단횡단 방지횡스 등의 계획이 변경 또는 신설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분의 높이 차 변경 등의 단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휴게공간과 필로티, 단지 내 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동별 제연 환풍, 쓰레기 분리수거장, 탭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남측 20m 도로, 동측 22m 도로, 북측 연결녹지, 서측 15m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은 북부교육군 고등학교에 배치 될 예정이며, 향후 에코델타시티 내 학생 수 증가 추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가칭 “에코5초” 및 가칭 “에코4중”에 배정될 예정이며, 개교 예정시기는 2025년 3월이나, 공공주택 분양공고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2026년 이후로 개교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는 관할 교육청 소관으로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추진계획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등 각종 분양홍보물의 배치도상에 표현된 일부DA, 제연 환풍은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통합커뮤니티, 관리사무소 등)이 인접한 동은 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필로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배치도상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수수 배수시설, 저수조, 기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입주 후 경관조명, 수경시설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당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과 대지경계에 접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발생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구조계획 상 벽체 및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과 분리되어 있으나 단지 차량출입구는 혼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 인근에 설치되며,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채광창(탑라이트)이 102-105동, 107-115동, 110-111동 인근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각 동 주변에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각 동 주변(동당 1개 구역)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배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허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101동 지하 1층 통합커뮤니티(피트니스, G/X룸, 건식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101동 1층 관리사무소, 통합커뮤니티(작은도서관 등), 101동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및 게스트하우스, 102동 1층 에듀센터(독서실, 스터디룸), 103동 1층 어린이집, 108동 1층 경로당, 111동 1층 근린생활시설, 키즈스테이션, 개인스튜디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레벨은 단지 모형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와 인접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체육활동 및 이용에 따른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주변현황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단지 내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E/V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 등은 동별·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1,246대(지하: 1,239대, 근린생활시설:7대)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및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저층부는 석재, 도장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면적 및 자재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의해 색채 등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급속, 완속용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분산 배치 될 예정이며, 동·호수별 지하층 입구와 급속, 완속용 전기차 충전설비간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15m 도로변 일부구간(도로 SET-BACK 구간)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으로 해당부지 및 시설물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해당관청에 무상 귀속될 예정입니다. 단, 사용검사 전 해당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SET-BACK 구간 내 설치된 도로 및 보도, 가로등, 가로수 등의 해당시설은 공공시설물로서 부지를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 유지보수 및 관리주체는 해당관청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 창은 전층 자동개폐창으로 적용되고,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내 창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01동에는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동별 유의사항

- 각 세대별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101동과 106동 근처 주출입구 및 111동 근처 부출입구에는 통학차량 정차를 위한 Drop off-zone과 키즈스테이션이 설치예정이오니 모형과 배치도에서 위치 확인바랍니다.
- 101동, 106동 인근에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110동, 111동 인근에 지하주차장 부출입구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세대 빛공해(눈부심) 등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11동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해당동 세대 및 인접동인 112동에 소음이나 업종에 따른 음식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111동 저층부 세대에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지상 19층 및 지상 1층, 지하 1층과 102동, 103동, 108동, 111동 지상 1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주택전시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차량 및 비상차량(이삿짐, 소방차량 등)의 출입에 의하여 소음, 진동, 불빛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01동 하부 주민공동시설 내 선크이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11동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1층 무인택배보관함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개선 및 본 시공시 공사여건 등으로 인해 천장고 및 접근 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외부 도로에 인접한 101동,106동 ,107동 ,111동, 112동 ,113동, 114동, 115동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수 있고, 단지 외부 보행자로 인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5동, 106동, 107동, 111동, 112동, 115동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인접한 107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인접한 115동, 빗물저류조 펌프실과 인접한 102,105,107,114동은 펌프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8동 옥상소화수조가 1개소 설치됩니다.
- 동별 송수구 및 상수도소화전 위치가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일부 위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직배기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주차장 이용 시 103동, 104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113동은 입주민은 105동 및 114동 인근에 계획된 별도의 엘리베이터 및 계단 활용하여 지하1층 주차장 및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구획 배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있는 106동, 107동, 115동 1층 3호라인 세대는 오렌지로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엘리베이터 홀 공용 사용에 따라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등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동별 지하 최하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제습기가 설치 예정입니다.
- 101, 106, 107, 115동 일부에 커튼월록이 설치 됩니다.
- 101동에는 주민공동시설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상부에는 옥상 조경(근린생활시설 및 에듀센터는 옥상 조경 미설치), 난관이 설치됩니다. 다만, 현장여건 및 인·허가 절차에 따라 난관설치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합니다.

성능부문	성능범주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법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 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의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예코델타시티 19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2. 신청자: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3. 대위취차: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예코델타시티 19BL)
4. 성능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수용률 과다인정	***
2. 중상용적률 과다인정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법성	***
3. 수리후이정 원상복원	*
4. 수리후이정 공동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적당	*
3. 도랑사 절사도량 최소화	-
4. 밀도 및 건립시기 대체지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인-패용에너지 이용	**
8. 지열수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초중용 보로 및 피구중년용 지장	-
10. 환경친화적 건물(건기)의 적용	***
11. 지열수 자체의 사용	***
12. 친환경 건축재료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적당 자체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양시설 설치	*
16. 빗물 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KEGE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장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예코델타시티 19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인증번호 : G-SEED-P-2022-0506-4
건립사업 : 건립사업	인증기관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건축주 : 부산도시공사	유효기간 : 2022.05.13.-사용종료일
준공예정일 : 2025. 02. 28.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예코델타시티 19BL)	인증 등급
중 수 : 지역2중, 지상19층	인증등급 : 우형(그린3등급)
연 면 적 : 151,396.7114㎡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 기준(공동주택)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설 계 자 : (주)중립건축사사무소 권원	인증기준 :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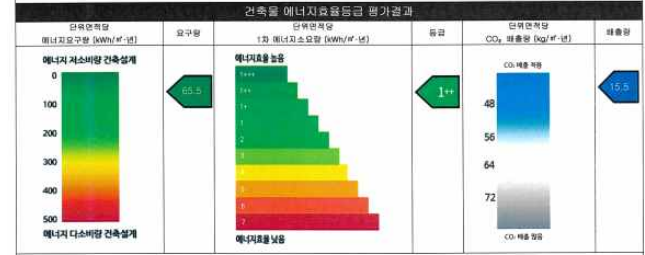


*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예코델타시티 19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인증번호 : 22-5-08-1+-0005
준공연도 : 20250131	설계자 : 박연재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예코델타시티 내 공영19)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 지하 2층 지상 7~19층(15개층)	인증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 151400.8810(㎡)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종료 전 종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중립건축사사무소 권원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년방	0.0	0.0	0.0	0.0
난방	27.2	36.0	28.1	6.2
급탕	30.7	41.4	20.4	6.8
냉방	7.6	5.4	14.8	2.5
환기		0.0	0.0	0.0
합계	65.5	82.8	73.3	15.5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하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022년 02월 15일



4.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비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

구 분		총 액	비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17,720,182,000	
	기간이자	1,626,893,000	
	필요적 경비	4,112,350,000	
	그 밖의 비용	43,512,504,000	
	계	166,971,929,000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2,028,395,000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339,253,000		
			석축공사	-		
			우수·오수공사	537,150,000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537,150,000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2,764,867,000		
			부대시설공사	-		
			계	6,206,815,000		
		건축	공통가설공사	2,952,664,000		
			가시설물공사	921,155,000		
			지정 및 기초공사	2,113,193,000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31,042,272,000		
			용접공사	-		
			조적공사	1,547,615,000		
			미장공사	1,597,587,000		
			단열공사	-		
			방수 방습공사	1,106,880,000		
			목공사	1,945,666,000		
			가구공사	960,662,000		
			금속공사	489,874,000		
			지붕 및 환통공사	149,978,000		
			창호공사	2,856,825,000		
			유리공사	898,437,000		
			타일공사	1,595,550,000		
			돌공사	174,121,000		
			도장공사	916,629,000		
			도배공사	517,193,000		
			수장공사	919,453,000		
			주방용구공사	640,442,000		
			그 밖의 건축공사	5,025,147,000		
			계	58,371,343,00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660,609,000	
				급탕설비공사	1,453,032,000	
		오·배수설비공사		1,495,859,000		
위생기구설비공사	717,849,000					
난방설비공사	392,837,000					
가스설비공사	305,716,000					
자동제어설비공사	119,525,000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19,897,000		
			공조설비공사	-		
			계	6,165,324,000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6,755,382,000	
				정보통신공사	1,681,775,000	
				소방설비공사	3,593,445,000	
				승강기공사	1,766,943,000	
				계	13,797,545,000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8,330,781,000	
				이윤	7,055,089,000	
				계	15,385,870,000	
	간접비			설계비	3,732,675,000	
				감리비	5,292,460,000	
				일반분양시설통계비	35,411,434,000	
				분담금 및 부담금	6,592,992,000	
				보상비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89,388,595,458	
계				140,418,156,458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32,449,517,542			
합계				439,766,500,000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출평균액)	가. (※)하나감정평가법인	나. (※)감정평가법인삼일
119,065,110천원	119,871,420천원	118,258,800천원

6.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가산비											
택지비 기간이자	흙막이 공사비	말뚝박기 공사비	기타 비용	소계	주택품질 향상 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인텔리전트 설치 추가비용					친환경 주택건설 가산비	지하 주차장 충고증가 공사비	법령·조례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사업승인 조건 충족 가산비	소계
							홈 네트워크 설치비	초고속 통신 특등급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 환기설비	소계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법정초과 조경 설치비	
1,627	14,267	29,245	4,112	49,251	5,800	1,571	10,813	1,728	3,056	5,204	20,801	2,628	220	257	1,172	32,449

7.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산도시공사 (605-82-05238) 디엘이앤씨(주)(676-87-01904) 극동건설(주) (201-81-45083) (주)대성문 (603-81-52586) 흥우건설(주) (601-81-18490) (주)신화종합건설 (605-81-21809)	디엘이앤씨(주) (676-87-01904) 극동건설(주) (201-81-45083) (주)대성문 (603-81-52586) 흥우건설(주) (601-81-18490) (주)신화종합건설 (605-81-2180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118-81-12617) (주)부흥이앤씨(605-81-75358) (주)드림종합기술단(547-86-00309)

8.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5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며,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 됩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예정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 www.elife.co.kr

■ 주택전시관 및 분양문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3-10번지 내 ☎ 051-751-553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주체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